

‘존재의 미학’에서 ‘통치적 실존론’으로

심재원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1. 존재의 미학

문성훈의 『미셸 푸코의 비판적 존재론』은 “그[푸코]의 비판적 존재론이 사회비판이론의 규범적 요구를 온전히 충족하기에는 미완인 기획임을 밝히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 발전의 방향을 모색”(6쪽)하는 저서로서 “푸코의 비판적 존재론을 사회비판이론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이를 프랑크푸르트 제3세대의 대표적 비판이론인 인정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비판”(13쪽)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여, “이 책은 푸코의 비판적 존재론을 사회비판이론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최종적 결론은 푸코의 비판적 존재론이 진위 게임식으로 구조화된 사회적 인정질서를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개인의 주권성에 기초한 대안적 인정질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책의 마지막에서는 푸코의 이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이러한 대안적 인정질서는 더 이상 복종을 통한 인정 획득이 아니라, 투쟁을 통한 인정 획득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했다.”(205쪽)

특히 서평자의 관심을 우선 끄는 ‘존재(실존)의 미학’과 관련하여, “그가 말하는 ‘존재의 미학’이란 진위게임식 인정질서의 지배에서 벗어나 주권적 자아 형성의 자유를 실현하려는 이론적 시도로 이해될 수” 있음에, “존재의 미학은 푸코가 사회적 지배 관계를 비판하고 자유의 상태를 규정할 수 있는 규범적 토대 역할을 한다.”(11쪽) 다시 말하여, 푸코에게 “존재의 미학이란 인간 자신이 바로 자신에게 실천하는 일종의 ‘자기 실천’으로서 개인이 자아 형성 차원에서 주권을 발휘함으로써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존재의 미학은 개인에게 사회적 인정질서의 강제에서 벗어나 자아 형성의 여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런 점에서 존재의 미학은 복종과 동일한 형태의 주체성이 아니며, 소극적인 의미에서 강제로부터의 해방도 아니고, 자주적 자아 형성이라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개인적 자유로 규정될 수 있다”(132쪽)는 것이다.

따라서 “푸코는 존재의 미학에서, 주체화 과정을 역설적으로 복종의 과정으로 만드는 진위게임식 인정질서로부터의 해방 가능성을 본다. 존재의 미학에 토대가 되는 것은 대안적 형태의 주체화 양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더 이상 복종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개인의 주권성 실현이라는 의미에서 자유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존재의 미학은 주체화 양식과 자유의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존재의 미학은 개인이 진위게임식 인정질서를 넘어 자신의 주권성을 행사함으로써 스스로 자아 형성의 주체가 되는 자기 실천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주권적 자아실현이라는 이념은 푸코에게서 사회비판의 규범적 토대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념은 현존 사회를 반성적으로 고찰함에 있어서 그것이 과연 주권적 자아 형성에 기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을 비판적으로 물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184쪽)

2. 미학적 실존

그런데 문성훈에 따르면, “존재의 미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푸코의 비판적 존재론이 사회비판이론의 규범적 관점 아래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 지배에 대한 비판과 이로부터의 해방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개인적 자유 개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추구하는 비판 모델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진위 게임식 인정질서가 개인의 자아 형성 자유에 대해 어떤 효과를 끼치는가 하는 점이었다 [...] 푸코의 비판 모델은 여기서 규범적 토대 역할을 하는 개인의 자유 개념 자체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낳는다. 따라서 이제 개인의 자유를 푸코가 말하는 존재의 미학으로 이해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존재의 미학 자체가 어떻게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133쪽) 푸코의 논의가 인정이론의 관점에서 이렇게 ‘규범적 정당성’ 확보의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침에 서평자는 우선 이런 부딪침의 지적이 규범적 기율의 논리를 정치 윤리의 문제화로 확장해가는 푸코의 이론적 비판에서 외삽적 단골 메뉴임을 상기하고, 더군다나 푸코 말기의 ‘행위의 인도’로서의 ‘통치’적 관점이 저서 전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부재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통치적 관점에 따르면, 푸코는 권력의 행사를 타자들의 행위에 대한 행위의 통치적 양식으로 정의할 때, 그는 ‘자유’를 여기에 포함시킨다. 즉 권력이란 자유로운 주체들이 자유로울 때에만 이들에게 행사된다는 것이다(*Dits et Ecrits* “Quarto” II, p. 1056). 그리고 푸코는 ‘자유로운 주체들’을 “여러 행위, 여러 반응 그리고 다양한 행동 양식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의 장을 자신들 앞에 가진 개별적 혹은 집단적 주체들”로 이해한다. (상동) 연속적 주체화의 중첩결정이 포화 상태를 이룬 곳에 권력 관계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과 자유의 대립, 이들

사이의 배제 관계, 권력이 행사되는 도처에서 자유가 사라지는 관계는 없는 것이고, 자유가 “권력의 존재 조건”으로서 나타나는, 또한 “결국에는 자유를 전적으로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는 권력 행사에 대립될 수만 있을”(상동, p. 1057) 훨씬 더 복잡한 게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푸꼬에 따르면 권력 관계를 자유의 불복종에서 분리할 수 없다. 권력 관계를 끊임 없이 도발하며, 권력 관계의 중심에서 자유는 그 목적적 대상이 없는 것이다.

물론 인정이론의 관점에서 존재의 미학은 “또한 푸꼬의 사회비판이 갖는 규범적 지위를 의심케 하는 근거가 된다. 이미 지적했듯이 존재의 미학에서 등장한 주권적 자아 형성 이념은 이에 대한 비판적 의혹을 낳고 있다. 즉 자아 형성에 대한 개인의 주권성을 강조하는 것이 개인 간의 규범적 결속 일반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존재의 미학은 사회구성원을 원자화할 수 있는 위험한 경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푸꼬가 사회적 관계 일반을 무엇보다도 개인의 주권성에 대한 족쇄로 보기 때문에 어떤 대안적 사회적 모습도 구상할 수 없었다고 이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주권적 자아 형성 이념은 비록 규범적 사회비판을 가능하게 하지만, 역으로 이 이념 자체가 규범적으로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푸꼬에게서 이에 대한 긍정적 대답을 발견할 수 없다면 개인의 주권적 자아 형성 이념에 기초한 그의 사회비판은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185쪽) 이런 의미에서 문성훈은 헨리히 핀크-아이텔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의명적 지식-권력 관계에 완전히 복종함으로써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을 해체시켜 버린 저 예측적 주체의 자리에, 즉 완전히 비자립적인 주체의 자리에 이제는 자율적이고, 근원적으로 자유로운 주체가 등장한다.” 따라서 “푸꼬가 자신의 전체 기획을 ‘주체’라는 테마를 통해 통합하려 한다면, 그는 과연 이 두 가지 주체 형태가 어떻게 통일적

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의 전체 기획이 근본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비판은 불가피하다.”(24 쪽) 그러나 우리는 이 대목에서 푸코의 미시 권력론이 주장하는 바가 일방적인 ‘예속된 주체’ 즉 ‘완전히 비자립적인 주체’를 넘어 항시 역전 가능한 관계로서의 세력 대립의 권력 관계망의 대상이자 주체임을 상기하고 이의 포괄적 연장선상에서 ‘자율적이고, 근원적으로 자유로운 주체가 등장’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통치적 권력관계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주체와 권력」(Foucault, “The Subject and Power” in Dreyfus & Rabinow,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Chicago: Univ. of Chicago, 1983)을 살펴보면, 우선 권력은 우선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관계를 작동케 하며 특정인이 타인들에게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들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이끌고 반응하는 행위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의사소통도 항시 타자에 대한 일정 정도의 행위 방식임에도 의미 요소의 생산과 순환은 권력 영역에서의 특정 결과를 목적이나 결과로 가질 수 있으므로, 권력관계와 의사소통관계 양자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양자는 서로 겹치고 지지하고 수단-목적 관계를 항상 이루므로, 의사소통관계는 목적화된 행위를 함축하고 상대자들(partnaires) 사이의 정보의 장을 변형시킴으로써 권력효과를 산출한다(pp. 217-8). 따라서 권력의 특수성(pp. 219-222)은 상대자 사이에서 특정 행위가 타자를 변경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권력 관계는 선형적 혹은 영구적 동의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합의의 표출은 아니다. 또한 폭력과 같이 타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행위 양식이 아니라 타자의 현재나 미래 행위에 대한 행위이다. 폭력의 사용이나 동의의 획득이 배제되지는 않으나 본질적으로 폭력이나 동의는 아닌, 이 ‘행위의 전체적 구조’에서 불가결한 “타자”는 행위자로서 끝까지 철저하게

‘인정’되고 유지된다. 그러므로 권력은 ‘통치’의 문제로서, 타자를 ‘인도’하는 동시에 다소 열린 가능성의 장에서 처신하는 것으로 인도의 가능성을 정향하고 가능한 결과를 질서지우는, 즉 타자의 행위의 가능 영역을 상호 자극과 투쟁 그리고 영원한 도발 관계를 통해 구조화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따라서 문성훈이 인정이론을 바탕으로 지적하듯이 “자유로운 주체와 권력 행사 간의 대립은 푸꼬가 인간관계를 힘의 관계로 규정하는 핵심적인 토대가 된다. 우리가 인간의 근원적 자유를 전제한다면, 즉 권력이 아직 행사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주도(인도)하는, 즉 자기 주도 상태에서 존재하며, 따라서 이러한 자기 주도에 반해 권력이 행사된다면 이제 불가피하게 저항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 권력 행사란 타인의 행위를 내가 주도하는 것으로서 타인이 자기 자신을 주도하는 것과 대립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타인 주도는 자기 주도로서의 인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훼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힘으로 주도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인간 사이에 형성된 힘의 관계란 결국 타인 주도를 둘러싼 투쟁과 저항이 야기하는 “전투”를 말한다.”(55쪽) 그러나 “푸꼬가 말하는 전투 개념은 불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그에 따르면 자유로운 인간 사이에 힘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결국 한 인간이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 역시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 근원적 상태의 자유로운 인간이 자기 주도의 한계를 넘어서 타인의 행위까지 주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푸꼬는 아무런 설명도 제시하지 않는다.”(55-6쪽) 푸꼬가 ‘근원적 상태’를 가정하는 형이상학적 입장 일체에 대해 침묵을 고수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역사 속에서 철학을 실천하고 기술하는 행동가이다. 물론 이러한 그의 태도가 그의 반형이상학적 침묵을 온전히 옹호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미시 권력론 이래로 그의 논의에 함축되어 있는 관계망 내에서의 타자에

대한 배려를 그가 무시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곤란할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이미 보았고 문성훈에게서도 보게 될, 권력의 상대자(파트너)를 통치적 관계에서 이미 '인정'한 후에 전개되는 견인과 견제의 통치론의 '인정 이후(post-recognition)'의 과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성훈은 인정이론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 투쟁 모델을 푸꼬에 적용한다면, 아마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간은 자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권력을 예방적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주도가 자기 보존으로 축소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기 주도란 자기 생명의 보존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결정되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실존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차 닥칠 수 있는 타인의 공격을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 즉 그것은 단지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방식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이다.”(57쪽) 이제야 우리는 문성훈이 자유로운 존재의 미학에서 방어적 미학적 실존으로 푸꼬의 주체론을 이행시키며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방어적 미학적 실존이란 ‘전향과 수양’을 매개로 외부 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기본 토대로 자신의 실존적 존재 방식을 지켜나가고 가꿔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3. 통치적 실존

결국 “푸꼬의 비판 모델은 당연히 사회비판 모델로 규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은 개인의 자아 형성 자유의 실현을 훼손하는 사회적 지배 형태를 폭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비판의 차원을 개인의 자아 형성과 공동의 삶의 공간인 사회 형성 차원으로 구분한다면, 푸

꼬의 사회비판 모델은 그 일면성을 피할 수 없다. 사실 푸꼬의 비판 모델은 사회를 문제 삼되, 오직 개인의 자아 형성 자유라는 관점에서만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즉 푸꼬는 비록 개인의 자기관계에 근거 없고 임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인정질서를 비판하지만, 이러한 인정질서를 허용하는 사회 자체에는 아무런 비판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114쪽) 다시 말하여, “이러한 문제 제기는 푸꼬의 비판 모델을 사회 형성 차원으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개인의 자아 형성 자유라는 관점에서 개념화하려는 이론적 요구를 함축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요구는 사실 충족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아 형성 자유는, 비록 정의로운 사회가 보장해야 할 사회적 조건일 수는 있어도, 이것 자체가 정의로운 사회의 형성 원칙과 동일시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요구로 축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 형성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의 자아 형성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는가에 있기 때문이다.”(114-5쪽) 그러나 그의 미시권력론의 대표작 『감시와 처벌』 이래로 「주체와 권력」에서도 푸꼬는 유명론적 입장에서나마 사회 일반에 대해 분명히 자신의 생각의 일단을 다음과 같이 드러낸 바 있다.

한 사회에서 목적적 행위, 의사소통체계 그리고 권력관계 사이에 일반적인 형태의 균형은 없다. 오히려 다양한 형태, 장소, 상황 혹은 경우에 따라 이들의 상호관계는 특수한 모델로 설정된다. 그러나 능력의 조정, 의사소통망 그리고 권력 관계가 조절되고 타협된 체계를 구성하는 ‘블럭(blocs)’이 있다. 기술적 역량, 의사소통 게임 그리고 권력 관계의 작동이 숙고된 방식에 따라 상호 조정되는 블럭이 넓은 의미의 ‘기율’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구성된 기율 ‘블럭’들의 경험적 분석은 대상 목적성 체계, 의사소통 체계 그리고 권력 체계가 상호 분절될 수 있는 방식을 명확히 보

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데, 18세기 이후 유럽 사회의 기율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의 일부인 개인들이 더욱더 복종했다는 것은 물론 아니고, 사회가 병영, 학교 혹은 감옥을 닮아갔다는 것도 아니라, 생산 행위, 의사소통망 그리고 권력 관계의 게임 사이에서 보다 더 통제된-갈수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조정이 추구되었다는 것이다(DEQ II, p. 1053). 이러한 '합리화의 정도'는 가능성의 장에서의 행위로서의 권력 관계의 작동이 도구적 효율성과 결과적 확실성(권력 행사에서 크고 작은 기술적 세련도) 혹은 (투입 수단의 경제적 비용이건 장애 대응 비용이건 간에) 발생 가능 비용에 따라 다소간 개선될 수 있는 정도이다. 권력의 행사는 직접적 사실도, 제도적 소여도, 유지되거나 깨지는 구조도 아니라 개선되고 변형되며 조직되고, 다소간 조정된 절차를 자기 부여한다.

물론 푸코는 자본주의 축적 과정의 사회적 이행을 준비했던 하부체계들(교육체계, 상업체계, 군사제도 등)을 단순히 목적 합리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규범 중립적인 층위로 바라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 층위는 호네트도 인정하듯이, “도덕적 사회화 메카니즘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통제 메카니즘”(The Critique of Power, p. 262)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이 메카니즘의 ‘합리적 技術性’을 강조했는데, 기율 체계는 18-19세기 부르주아 헤게모니의 ‘기술적’ 발명이고, 권력 주체나 대상 모두가 포획되는 장치이다. 따라서, ‘18세기 동안에 경제적 합리화 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술, 권력의 기술 그리고 지배 기술의 합리화가 있었고 기율은 이러한 정치적 기술의 거대하고 중요한 발견’이며 ‘극단적 합리성의 지배 기술’이라고 푸코는 지적한다. 사실 푸코가 중시하는 것은 정치이론이 아니라 권력의 메커니즘, 테크닉, 테크놀로지이다. 17세기와 18세기와 주로 개인의 신체에 집중된 권력기술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개인의 신체를 공간적으로 배치하고, 이 개인 신체들 주변에 감시의 영역을 설치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런 기술을 통해 권력은 신체를 떠맡아 훈련과 단련 등으로 신체의 유용한 힘의 가치를 증가시키려 했

다. 이는 다름 아닌 권력의 엄격한 경제학과 합리화의 기술인데, 이 권력은 감시, 위계서열, 조사, 서류, 보고서의 체계에 의해 최소의 비용으로 행사되어야만 했다. 이 모든 기술을 우리는 노동에 대한 기율적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이 17세기말과 18세기에 정착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권력관계의 여기저기에 ‘계산’이 스며들어, 일련의 목표와 목적이 없이 행사되는 권력이란 없다. 이러한 권력의 합리성은 제한된 층위에서 흔히 명료하게 드러나는 전술적 합리성이다.

기율 사회의 상황이 이렇게 새롭게 해석됨에도, 문성훈이 “사회적 지배와 해방에 대한 푸코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는 사회적 저항의 대상이 무엇인지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진위게임식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인정질서이다.”(61쪽)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저항은 “복종을 통한 주체화 양식, 즉 사회적 진위게임에 복종함으로써 스스로 자아 형성의 주체가 되는 주체화 양식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저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식과 권력이 복합체를 이루면서 형성한 진위게임에 다시 주체가 결합하는 것이다. 푸코에 따르면 주체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즉 “통제와 의존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의식과 자기인식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한다. 사실 주체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주체화 역시 프랑수아식 표현인 ‘assujettissement’이 함축하듯이 역설적인 과정을 나타낸다. 즉 개인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사회적 진위게임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은 개인으로 하여금 현재의 지식 체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에 적응하도록 강제한다. 개인이 여기에 복종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설적 형태의 주체화 양식은 세 가지 점에서 저항을 어렵게 만든다. 즉 개인이 사회적 진위게임에 복종함으로써 자기의식과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는 것이 라면, 첫째로 우리는 저항의 목적, 즉 무엇을 위해 복종을 통한 주체화

양식에 저항하는지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은 또한 둘째로 도대체 어디에서 저항의 동력을 찾아야 할지를 규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복종이 생산적이라면 우리는 굳이 이에 저항할 동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복종을 통한 주체화 양식은 저항의 본질적 문제, 즉 누가 저항의 주체인가를 규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만약 개인이 복종을 통해 주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저항의 주체가 바로 진위게임에 복종함으로써 형성된 바로 그 주체인가하는 해결 곤란한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65-6쪽) 이 대목에서 푸코는 반형이상학적 입장을 넘어서 일종의 경험적 자연주의에 경도됨을 서평자도 묵과할 수는 없는데, 미시적 권력 관계는 다양한 저항점들에 관해서만 존재할 뿐이며, 저항점들은 권력관계에서 적대자, 표적, 지지점, 포착 돌출점 역할을 함에 이 저항점들은 권력망 내 도처에 특별한 존재 이유가 없이 반작용적인 신체와 영혼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자연주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푸코의 사회비판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푸코가 앞으로 사회비판이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턱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단지 현존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적 사회상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비판이론 말이다. 분명 푸코는 사회비판의 규범적 토대 역할을 하는 주권적 자아 형성이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따라서 그에게는 인정 관계를 복종의 조건이 아니라, 자유의 조건으로 파악하게 할 수 있는 단초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초들은 단지 푸코의 이론이 사회비판이론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아직 미완의 단계에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몰두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188쪽) 이제 우리는 ‘인정 이후’ 권력 관계의 전반적 사례들을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개체적 주권성에 기반한 통치적 관계를 실존적 해방의 현실적 목표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